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인력 배치(안 제4조~제5조)
- 라.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6조~제7조)
- 마. 지도·점검(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tjvy9207@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채류 방지 대책 마련
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유관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보험료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2. 통역·번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업무협약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